

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

2021. 8.

농림축산식품부
(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)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정이유

「국립농업박물관법(법률 제18253호)」이 2021.6.15. 제정되어 2021.12.16.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5조에 따라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전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 자료와 수익사업의 범위·승인절차 등을 정함(안 제2~3조)
- 나. 법 제11조에 따른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출연금, 차입금 및 기부금에 대한 운영 절차를 정함(안 제4~7조)
- 다.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·예산서 및 수입·지출의 결산서 등의 보고·승인 절차를 정함(안 제8조~9조)
- 라.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, 세부기준을 3개월전까지 박물관에 통보 하도록 정함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1) 제정안(조문)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8. ~ 10.)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박물관 자료) 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(이하 “박물관 자료”라 한다)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·무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.

1. 법 제2조에 따른 국립농업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·전시·체험·교육할 학문적·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
2. 농업·농촌문화 및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역사·민속·예술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

제3조(수익사업)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
2. 박물관 시설의 임대
3. 박물관 관련 기념품·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·판매
4.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
5.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

6. 박물관의 체험시설의 이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

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박물관의 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익사업 승인신청서

2. 수익사업 계획서

3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③ 관장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관장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) ① 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

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·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3.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출연금의 지급) ① 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출연금 지급신청서

2. 분기별 사업계획서

3.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.

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출연금을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장기 차입금의 승인 신청) 관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

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차입처, 차입 사유,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
2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
3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

제7조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관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 관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목표
2. 사업내용
3. 수혜대상
4. 사업비용
5.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산총칙
2. 추정재무상태표·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자금계획서
4.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
2.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제9조(결산서의 제출)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·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(공인회계사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서류
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
3. 수입·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
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제10조(잉여금의 처리)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1조(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(이하 “후원회”라 한다)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.

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,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2조(박물관 자료의 위탁·관리)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 자료의 훼손·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·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
제13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)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파견요청 사유
2. 파견기간
3. 파견인원
4.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

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

는 아니 된다.

1. 국가공무원의 경우: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

2. 지방공무원의 경우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

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“운영평가”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경영전략·리더십, 사회적 가치구현, 국민소통 및 혁신, 조직·인사·재무관리 등

2. 박물관의 주요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: 주요사업별 계획·활동·성과 등

3.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: 국민소통, 고객만족도, 서비스 개선실적 등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, 기준,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농업 박물관이 아닌 자가 국립농업박물 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	250	300	500
나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농업 박물관이 아닌 자가 국립농업박물 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	150	200	300